

7) 기타

가) 휴직기간의 재직경력 인정여부

- (1) 경력평정: 상근 100%, 비상근 50% 산입(「교육공무원 승진규정」 제11조제1항제1, 2호)
- (2) 호봉승급: 상근 100%, 비상근 50% 산입(「공무원보수규정」 제15조제4호)

상근근무와 비상근근무의 구별 기준

- 상근 근무: 주당 수업시수 15시간 이상 또는 주 40시간(당해국가의 법정근무 시간) 이상 근무
- 비상근 근무: 주당 수업시수 6시간 이상 14시간 이하
- 기타: 주당 수업시수 5시간 이하는 휴직사유로 불인정
 - ※ 고용휴직 중 고용기관의 사정으로 주당 5시간 이하의 수업을 담당하였을 경우에 동 기간은 교육경력 및 호봉승급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함. 단, 주당 수업시수가 5시간 이하로 6개월 이상 계속될 경우는 휴직사유가 소멸된 것으로 간주하여 복직조치 하도록 함.
 - ※ 당초 계약과 달리 매월 일정액을 보수로 받지 않는 경우에도 교육경력 또는 승급기간에 포함되지 않도록 하고, 무보수가 6개월 이상 계속될 경우 휴직사유가 소멸된 것으로 간주하여 복직 조치하도록 함.
- ※ 참조: 교육공무원의 고용휴직제도 운영개선 방안('99.3.9)

나) 결원 보충: 6월 이상 휴직 시 별도정원에 의한 결원 보충

다) 보수

- (1) 봉급: 지급안함. 단, 휴직한 날이 속하는 달의 봉급은 일할계산하여 지급
- (2) 수당: 지급안함. 단, 휴직한 날이 속하는 달의 수당은 일할계산하여 지급

라) 고용휴직은 「교육공무원 인사관리규정」 제24조에 의거 휴직의 허가 시 교육과정운영, 교원수급, 휴직목적의 적합성, 복직 후 교육발전 기여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승인함

경기도교육청 교육공무원 청원휴직 심사기준 중 고용휴직 부분 발췌

고용휴직은 휴직의 범위를 과다하게 넓게 규정하고 있으나 경기도의 교원수급 수급사항, 기간제교사의 증가, 교육과정 운영, 소요예산, 휴직목적의 적합성 등을 고려하여 초·중·고등학생을 직접 교육하는 **재외교육기관**(교육부장관이 승인한 재외 한국학교)에서 전임으로 고용계약을 한 경우에 한하여 허가함을 원칙으로 하며, 초·중등학생을 직접 교육하지 않는 국제기구, 외국기관, 국내외의 대학·연구기관, 다른 국가기관에의 고용 휴직은 허가하지 아니한다. 또한 일부 요일만을 특정하여 고용 계약하여 실질적으로 전임으로 근무한다 할 수 없는 경우 이를 허가하지 아니하며(예: 한글학교, 시간제 근무), 휴직기간이 연속하여 5년이 초과된 경우에는 복직 후 일정기간(최소 1년 이상) 근무한 후에 다시 고용휴직을 할 수 있다. 기타 상기 기준 외의 사유로 고용휴직과 관련하여 특별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심사를 통하여 허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 「휴직기간이 연속하여 5년」에 대한 해석: 학교에 복직하여 일정기간(최소 1년이상) 근무하기 전까지의 고용휴직 총기간이 5년임을 의미하는 것으로, 고용휴직기간이 5년 연속되는 경우는 물론 고용휴직에 이어 다른 휴직, 파견 등으로 전환하여 실질적으로 단위학교에 복직·복귀하기 전의 고용휴직 총기간이 5년인 경우도 이에 해당된다.

예를 들어 고용휴직 3년을 한 후 이어서 동반휴직 1년을 하고 다시 고용휴직 2년을 하였다면 이는 고용휴직 연속 5년에 해당되어 더 이상의 고용휴직은 불가하다. 따라서 이 경우 연속이 아니므로 동반휴직 이후의 고용휴직부터 기산하여 추가로 고용휴직을 3년 더 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고용휴직을 신청하는 것은 인정되지 아니한다. 이는 휴직기간 산정의 혼란과 악용의 우려를 없애 기준을 명료화하기 위한 것임.